

심사보고서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547
----------	-----

2017.1.25.(수)
행정문화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나. 제출일자 : 2017년 1월 6일

다. 회부일자 : 2017년 1월 10일

라. 상정일자 : 2017년 1월 17일

- 제35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 상정·의결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2. 제안 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행정국장 조병욱)

가. 제안사유

- 여성재단 출범에 따른 여성조직 개편 및 전국체전추진단 기능보강, 혁신도시관리본부 직제 축소 등 정원 조정사항을 자치법규에 반영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정원의 총수 : 3,298명 → 3,291명 (△7)
 - 집행기관의 정원 : 1,571명 → 1,564명 (△7)
- 직급별 정원채정기준 (안 별표 2)
 - 6급 : 32% 이내 → 33% 이내 (+1%)
 - 7급 : 33% 이내 → 34% 이내 (+1%)
 - 8급·9급 : 9.5%이상 → 7.5%이상 (△2%)

○ 관리기관별 정원조정 내역 (안 별표 3)

- 본 청 : 1063명 → 1,073명 (+10)

- 사업소 : 266명 → 249명 (△17)

3. 검토보고 요지

○ 금번 개정조례안은 여성재단 출범에 따른 여성조직 개편 및 전국체전추진단의 기능보강, 혁신도시관리본부 직제 축소 등 정원 조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여성발전센터의 1과 4팀을 폐지하고(17명 감원), 여성정책관에 여성발전센터의 시설관리팀을 신설하고(5명 증원), 전국체전추진단에 대외협력팀을 신설하고(6명 증원), 혁신도시관리본부를 과체제에서 팀체제로 변경(1명 감원)하고자

- 정원의 총수를 3,298명에서 3,291명으로 7명 감원하고, 직급별 정원채정 기준을 6급은 32% 이내에서 33% 이내로, 7급은 33% 이내에서 34% 이내로, 8급과 9급은 9.5% 이상에서 7.5% 이상으로 변경하는 것임

○ 금번 개정조례안은 여성재단 출범에 따라 여성발전센터를 폐지하고,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혁신도시관리본부의 기능을 축소하며, 올 10월 개최될 전국체전을 성공리에 개최하기 위해 전국체전추진단의 조직을 강화하기 위한 적합한 정원조정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 론 요 지 : “생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요 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547호
의결 연월일	2017년 월 일 (제 회)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충 청 북 도 지 사
제출연월일	2017년 1월 6일

법무통계담당관 심사를 마침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547
----------	-----

제출연월일 : 2017년 1월 6일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1. 제안사유

- 여성재단 출범에 따른 여성조직 개편 및 전국체전추진단 기능보강, 혁신도시관리본부 직제 축소 등 정원 조정사항을 자치법규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정원의 총수 : 3,298명 → 3,291명 (△7)
 - 집행기관의 정원 : 1,571명 → 1,564명 (△7)
- 직급별 정원채정기준 (안 별표 2)
 - 6급 : 32% 이내 → 33% 이내 (+1%)
 - 7급 : 33% 이내 → 34% 이내 (+1%)
 - 8급.9급 : 9.5%이상 → 7.5%이상 (△2%)
- 관리기관별 정원조정 내역 (안 별표 3)
 - 본청 : 1063명 → 1,073명 (+10)
 - 사업소 : 266명 → 249명 (△17)

3. 의안전문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관계법령 발췌 : 붙임

6.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원의 총수) 충청북도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3,291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집행기관의 정원 : 1,564명
2. 소방본부 및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 1,614명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 43명
4. 의회사무처의 정원 : 70명

별표 2 및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현원 해소 시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별표 2]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채정기준(제3조제2항 관련)

1. 일반직공무원

구 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9급	전문경력관
비 율	6% 이내	18% 이내	33% 이내	34% 이내	7.5% 이상	1.5% 이내

2. 연구직·지도직공무원

구 분	연구직		지도직	
	연구관	연구사	지도관	지도사
비 율	20% 이내	80% 이상	26% 이내	74% 이상

3. 소방직공무원

구 분	소방정이상	소방령	소방경	소방위	소방장	소방교	소방사
비 율	1% 이내	3% 이내	10% 이내	9% 이내	15% 이내	31% 이내	31% 이상

4. 별정직공무원

구 분	4급상당 이상	5급상당	6급상당	7급상당	8급상당	9급상당
비 율	34% 이내	26% 이내	10% 이내	10% 이내	18% 이내	2% 이상

※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직급별 / 기관별	총계	본 청	의 회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총 계	3,291	-				
정무직 계	1	1				
도지사	1	1				
일반직 계	1,438	-				
1~2급	1					1
2~3급	2	1	1			
3급	9	7		1		1
3~4급	2	2				
4급	66	42	7	5	6	6
5급이하 소계	1,340	-				
전문경력관 소계	18	-				
별정직 계	12	-				
1급 상당	1	1				
4급 상당	3	3				
5급상당 이하 소계	8	-				
연구직 계	157	-				
연구관	30	1		27	2	
연구사	127	-				
지도직 계	26	-				
지도관	6			6		
지도사	20	-				
소방직 계	1,614	-				
소방정	15	4		11		
소방령이하	1,599	-				
교육공무원 계	43	-				
총장	1			1		
교수·부교수· 조교수전임강사	30			30		
조교	12	-				

※ 복수별정은 별정에 포함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원의 총수) 충청북도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3,295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집행기관의 정원 : 1,571명</p> <p>2. 소방본부 및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 1,614명</p> <p>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 43명</p> <p>4. 의회사무처의 정원 : 70명</p>	<p>제2조(정원의 총수) 충청북도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3,291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집행기관의 정원 : 1,564명</p> <p>2. 소방본부 및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 1,614명</p> <p>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 43명</p> <p>4. 의회사무처의 정원 : 70명</p>

관계 법령 발췌

【지방자치법】

제112조 (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⑥ (생략)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2호와 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 분청·소방학교와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회행정기관의 정원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도의 5급 이하(시·군·구는 6급 이하) 직급별 정원과 지방전문경력관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 ⑤ (생략)